

■ 심결/판례 ■

기업결합 시정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1. 사안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A방송사의 모회사인 원고가 B방송사 주식 98.58%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A방송사에 '일정기간 수신료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방송사에게 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A방송사는 이미 시정조치의 불이행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A방송사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A방송사를 흡수합병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가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정조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2)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일정기간 동안의 부작위 의무를 불이행한 후 그 불이행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면 그때 불이행을 중단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할 수 있게 되어 이행강제금 규정이 규제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